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05.5.26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4.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7.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총 무 위 원 회

1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5. 5. 18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3인

다. 회부일자 : 2005. 5. 19

라. 의안번호 : 제2005 - 28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존의 수여대상 추천권자외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4호)

○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국내외 귀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기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중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확대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창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거창군 홍보를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 제정후 현재까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2004년도 1명(전 거창군세무서장 조동호), 2005년도 1명(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최종원) 뿐임.

○ 추천권자를 기존외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대상자의 인적사항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조례개정안에 대한 군수의견

○ 대상자의 확대는 검토중이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2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5. 5. 18
나. 발 의 자 : 신전규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5. 5. 19
라. 의안번호 : 제2005 - 29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어려운 계층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의 주민이 위급상황 발생시 별도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훈대상자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내용은 긴급구호비 및 급식비, 월동대책비, 위문금·품, 학자금등 교육관련 경비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결식아동 및 학자금, 저소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며, 본인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실태조사후 군수가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전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해 이웃돕기성금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의 규정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이웃돕기성금으로 도와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유사성격의 기금으로 운용중인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2005년도 예산에 최저생활보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을 위하여 수급자생계급여(3,624명)예산 52억3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1998.4.30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송파구청등에서 제정·시행하는 조례로써 지원자 결정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의 내용처럼 관련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송파구청등에서는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의한 별도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조례안에 대한 군수의견

○ 위급상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명절등에 위문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

5. 제정근거

○ 地方自治法 제9조, 제10조, 제15조

5.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8>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管理

다.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

라. 老人·兒童·心身障碍者·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운영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자. 淸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

3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5. 19

라. 의안번호 : 제2005 - 22호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와 통합·운용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설치토록 하고 기금의 재원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융자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개인과 기관.단체 등으로 자활지원, 기관육성, 복지증진, 연구 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하되 복지증진 사업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제1,2항)

생활안정기금은 개인으로 소규모 영세사업, 재난시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융자금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융자한도액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기금”은 1천만원으로 하되 이율은 연3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융자시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함 (안 제6조)

○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는 5년거치5년 균분상황으로, “생활안정기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함(안 제8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거창군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11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3조)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성격이 유사한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임.

○ 안 제5조의 융자한도액중 “생활안정기금”은 종전의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대부이율 연3%와 연체이자율 15%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1991.1.5)할 당시와 동일 수준의 것이나, 연체이자율을 15%로 정한 것

은 융자대상이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됨(농협에서의 신용대출자 연체금 적용비율이 15% 정도임).

○ 안 제6조중 제3항의 “기금 융자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령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이를 인용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제상 부적정 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중 “생활안정기금”은 종전과 같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목적이 비슷한 것에 비하여 융자기간은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99.9.7 제정되어 2000.10.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2000.9.19 조례안이 시달된 것임에도 현 시점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규모와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계획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액은 304백만원이며, 민간융자금 규모는 2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기타 동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정1999.9.7 법률제6024호**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관련 조례안 시달(2000.9.19, 경상남도지사)

4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1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5. 19

라. 의안번호 : 제2005 - 23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잡수입금 등으로 하되, 기금목표 도달시까지 계속 조성토록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중.고등학생을 지급대상자로 하되, 특별장

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규정함(안 제8조)

○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장학생은 읍면장의 추전에 의거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조정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점수미달, 휴학처분, 전출, 저소득층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과 일반장학생의 지급대상기준 점수를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임.

○ 안 제3조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와 “잡수입” 상충되는 문장으로 문구의 성격상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의 제1항의 일반장학생의 자격으로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를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규정한 것으로 장학금성격보다는 학자금 지원성격인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9조의 내용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라는 사항

중 “예산”이라는 용어는 예산과 기금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기금지출계획의 범위안에서”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2005년도 기금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보면 2004년도말 적립된 기금은 290,838천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12,315천원이나, 지출계획은 17,500천원으로 전입금에서 5,185천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地方自治法 제15조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19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5. 19

라. 의안번호 : 제2005 - 2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과 단위 전담가구 설치

○ 2005.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현행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직개편

나. 주요골자

○ 군의 본청에 실과설치 및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 (안 제3조)

-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함.
-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
- 직제순서와 일부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산림환경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신설),

- 본청 실과의 소관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함.

실과별	이관받은 업무(담당)	이관한 업무(담당)	신설업무 및 담당
기획홍보실	홍보, 정보통신	혁신분권	
열린민원실	식품위생, 산업민원	건축관련 복합민원	복합민원담당
행정과	혁신분권, 주민자치	정보통신	공무원단체담당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경제통상과		미래산업(폐지)	마켓팅담당
문화관광과	박물관, 도서관업무	공보, 청소년업무	스포츠레즈담당 이벤트팀
사회복지과	청소년, 재가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획담당
산림환경과		토석채취, 형질변경	수질관리담당
건설과		재해재난 종합관리	보상팀
도시건축과	건축관련민원	골프장팀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120봉사대		재난관리, 복구지원

○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략개발, 교육지원, 전략사업 추진을 담당토록 사무를 분장함(안 제4조)

○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를 통합하는 “농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교육문화센터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과 군립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 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실시한 후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여유기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 50만미만의 시군에서는 1개실·과를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임.

○ 동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거창군의 전반적인 조직내용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5. 5.20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직개편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중

- 실과명칭을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종합민원실→열린민원실, 경제과→경제통상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 분장사무중 외래어로 표기된 경제과의 마켓팅은 판로개척으로 문화관광과의 스포츠레즈는 여가문화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 교육문화센터의 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변경시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이(연간 9천만원) 중단됨으로 종전대로 사회복지관으로 표기함.

○ 요구사항중 마켓팅담당과 상공담당간의 업무중복성으로 통합, 공무원단체담당의 신설대신 기존 서무담당에사 담당,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담당의 통합, 농업기술센터의 생활문화담당의 존치 필요성, 문화관광과의 등산로 개발업무를 여가담당으로의 업무이관 등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정시 반영할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업무보고시 언급된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건축허가 민원에 관한사항"을 종합민원실에 존치하는 사항과여유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분장업무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부칙 제2조의 각항은 부서명 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실·과·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나, 4항부터 11항까지는 종전 행정기구조례 개정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여 금회 조례개정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개정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조례개정안은 2005.4.19 및 2005.5.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본조신설 2004·12·18]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신설 2004·12·18>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본조신설 95·5·16]

○제25조(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18]

○ 제26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18]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19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5. 20

라. 의안번호 : 제2005 - 27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과 단위 전담가구 설치

○ 2005.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 신설업무에 따른 정원승인

나. 주요골자

○ 거창군 공무원의 정원을 644명에서 668명으로 정원조정

1. 집행기관의 정원 : 630명⇒ 654명(증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규정을 둠(안 제3조)

○ 집행기관 한시정원 4명중 1명은 2006.12.31일까지로, 3명은 2007.6.30일 까지로 두도록 규정(안 부칙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설치와 신설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원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금번 조정된 정원은 최고정원을 기록한 1995년의 701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최소치를 기록한 1995년도의 555명에 비하여는 113명이 증원된 것임.

-인력증원(24명)에 따른 소요예산액 : 968백만원

· 5급1/66,852, 6급5/250,267, 7급/5 211,592, 8급8/213,941 9급5/123,450천원

○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한시정원중 2006년 12월 31까지로 존속하는 사항은 금번 정원승인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담당인력 1명이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하는 3명은 혁신분권관련 담당인력임.

○ 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 5.20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요구한 일부신설담당의 적정인원 배치 요구 사항, 과다한 담당신설 억제 등은 집행부에서 규칙제정시 반영할 사항임.

- 별표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첨부한 것으로 직급별 변동사항중 6급이 종전보다 6명 증가된 것은 승인 5명(재난2, 조사평가1, 공무원단체1, 조사평가1)과 일반직 적용비율 27%에 따라 1명의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임.

- 의회사무과의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기능직 2명에 대하여는 8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의사과의 기능직 1명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 8급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 기능직 대신 일반직으로의 전환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동 조례개정안은 2005.4.19 및 2005.5.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본조신설 2004·12·18]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신설 2004·12·18>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본조신설 95·5·16]

○제25조(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18]

○ 제26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18]

7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 동의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20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5. 20

라. 의안번호 : 제2005 - 30호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교육도시의 기반조성과 명문학교 육성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장학사업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 2005년도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비중 50,000천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함.

○ 장학금 지급대상은 관내 중·고·대학생중 우수학생을 선정

- 명문대진학자 등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대상 선정

○ 대상자 접수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함.

○ 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재단 설립과 연계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해당 읍면장이 아닌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경우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간 사업비 10억원 정도됨.

○ 장학사업계획은 기존의 댐건설 주변지역 대상읍면인 5개읍면외 거창군 전체지역 중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창지역의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거창군 육영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으로 장학금 설치 조례제정과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은 군 계획확정 후 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 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을 위하여는 조속한 기일내 기금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의 기금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참고자료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등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계획수립)

②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